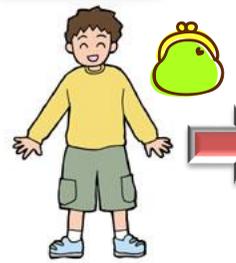


유실물을 주우신

습득자



노상에서 습득한 경우

시설내에서 습득한 경우

경찰서, 파출소등에 제출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시 습득자 권리가 소멸됩니다.)

시설 관리자에게 제출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시 습득자 권리가 소멸됩니다.)

경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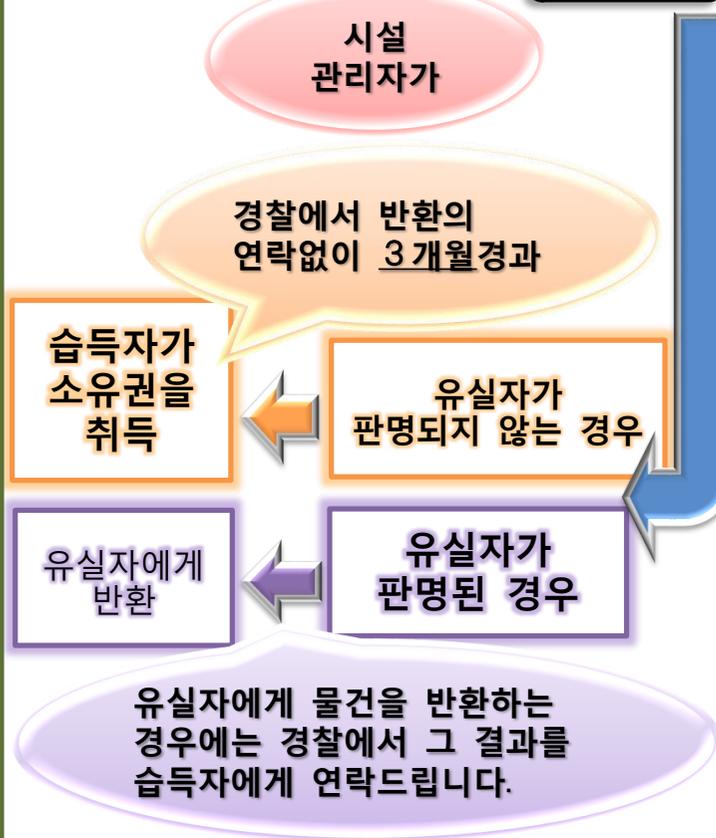


귀국하실 때에는 귀국후에도 연락 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기입에 주십시오.

「습득물보관서」는 경찰에서 물건을 수령할 때 습득자에게 교부됩니다.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해당물건을 수취하실때 필요하시므로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습득자의 권리

- ① 유실자에게 보수금을 청구하는 권리**
유실자가 판명된 경우, 물건 가치의 5%~20%의 보수금을 유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내에서 습득한 경우 2.5%~10%)
- ② 3개월이내에 유실자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 물건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3개월 이내에 유실자가 판명되지 않고 물건의 수취를 희망하는 경우, 습득물보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인수기간 (2개월간) 이내에 경찰서에 수취하러 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의 보관등에 든 경비를 부담하셔야 경우가 있습니다.)
송부에 의한 수취를 희망하시는 경우 「물건송부의뢰서」 및 「수령서」를 미리 작성하시고 송료 (전액자기부담) 과 함께 경찰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의해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 신용카드나 핸드폰등 개인 정보가 기재되어있는 물건의 소유권은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 ③ 물건의 제출,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는 권리**
유실자의 물건을 제출, 보관하는데 든 비용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기의 권리중 어느것이든 선택하여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 ①또는③의 경우, 유실자에게 습득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립니다.
· 보수금, 비용에 대하여 경찰은 관여하지 않으오니 유실자와 상의 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①또는③은, 유실자의 물건이 반환되고 1개월이 경과되면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에서 물건을 3개월 보관 하고 유실자를 찾기위해 공고 나 관계기관에의 조회조사등을 실시합니다.
※우산, 의류등은 공고날로 부터 2주일이내에 유실자가 판명 되지 않는 경우 매각 또는 처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落し物を拾った場合について》

【분실물을 주우신 경우에 대해】

1. 분실물은 주우신 분 (습득자) 은 신속히 그 물건을 떨어뜨린 사람 (유실자) 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어느 경찰서, 파출소, 주재소라도 괜찮습니다.
2. 역, 백화점, 유원지, 호텔, 병원, 건물등의 시설 안이나 전철, 버스, 택시등의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주운 경우에는 신속히 역관리인, 종업원, 점원등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또한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주운 경우에는 주운 후 24 시간 이내에 관리자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자로서의 권리가 없어집니다.
3. 경찰에 분실물을 수리하시는 경우, 신고하는 습득자는 주운 날짜・장소, 분실물의 특징, 유실자에게 반환되지 못했을 경우에 유실물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등이 기재된 「습득물 보관서」 를 드립니다.
분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해당 분실물을 취득하실 때에 필요하므로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落し物が警察に届けられた後の流れ》

【분실물이 경찰에 신고된 후의 절차】

1. 경찰에 신고된 분실물은, 경찰이 유실물을 찾기위해 공고나 관계기관 혹은 사업자등에 조회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신고된 날로부터 3 개월동안 경찰서에서 보관합니다.
단, 우산, 의류, 손수건, 목도리, 넥타이, 벨트, 그 외의 의류와 몸에 지니는 섬유제품 또는 가죽제품, 신발, 자전거, 동물에 대해서는 공고날로부터 2 주일이내에 유실자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 매각 또는 처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유실자가 판명되었을 때는 경찰에서 그 사람에게 연락하여 반환합니다. 유실자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습득자에게 그 사실을 연락드립니다.
3. 유실자가 분실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습득자가 그 분실물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유실자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된 날로부터 3 개월의 보관기간이 경과된 후 2 개월내에 습득자가 그 분실물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습득자도 취득하지 않는 분실물은 소유권이 도도부현에 귀속되어 매각 또는 폐기 됩니다.

《拾得者の権利について》

【습득자의 권리에 대해】

1. 습득물을 신고함으로써 습득자로서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단, 분실물을 주운 날로부터 7일이내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주운 경우는 24시간이내)에 경찰서등에 제출하지 않으면 각각의 권리는 없어집니다.

① 유실자에게 보수금 (물건가치·가격의 5%~20%)을 청구하는 권리

유실자가 판명된 경우 분실물 가치의 5%에서 20%사이에서 유실자로부터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역, 백화점등의 시설에서 주운 경우, 사례는 관리자와 절반으로 나뉘야 하므로 물건 가치의 2.5%~10%가 됩니다.

② 3개월이내에 유실자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 분실물을 취득할 권리

3개월이 지나도 유실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분실물을 자기 물건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유실자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연락이 없을 경우는 귀하가 분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오니 습득물보관서에 기재되어 있는 습득물 인수기간내에 경찰서에 연락하신 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인수기간은 2개월로 그 기간을 지나면 분실물의 소유권은 도도부현에 귀속하게 됩니다.

(단, 법령 규정에 의해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 신용카드나 신분증명서, 휴대폰등의 개인정보가 기록되어있는 물건의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③ 분실물의 제출,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는 권리

분실물을 돌려 받은 유실자에게 분실물을 제출할때 걸린 비용 (운반비등) 및 보관할 때 필요로 한 비용 (동물의 치료비나 먹이비용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분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경찰에서 보관하는데 든 비용을 부담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2. 귀하가 소유권을 취득하신 물건을 경찰서에 인수하러 오시기 힘든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송부에 필요한 송료는 자기부담입니다.

송부로 인수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송부처, 송부방법등을 기재한 물품 송부의뢰서 및 분실물의 수령서를 미리 작성하시어 송부에 필요한 요금과 함께 경찰서에 제출해 주십시오. 송료에 관해서는 일본국통화 (엔) 만을 취급합니다.

3. ①부터③까지의 권리에 대해서는 어느 것을 선택해서 주장할 수도 있고 또한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4. ①의 보수금 및 ③의 비용을 청구하는 권리를 행사 하실 경우에는 유실자에게 귀하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5. 보수금 및 비용에 관해서는 경찰은 관여하지 않으오니 유실자와 상의하여 정해 주십시오.

6. 보수금 및 비용등을 청구하는 권리는 물건이 유실자에게 반환 된 후 1개월을 경과했을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7. 해외 거주 의 경우, 분실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귀국 후라도 경찰서

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십시오. 귀국 후에
우송으로 송부를 희망하시는 경우도 송부에 필요한 송료는 모두 자기부담입니다.

송부처, 송부방법등을 기재한 물건송부의뢰서 및 분실물의 수령서를 미리 작
성하시어 송부에 필요한 송료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해 주십시오.

송료는 일본국통화 (엔) 만을 취급합니다.